

의안번호	2214557
의 퇴 인	이성권의원
회 답 일	2026.4.6.
추계번호	25B64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800만원(연평균 1,96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98	-	-	-	-	98	19.6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등의 책무)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2	안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	• (미대상) 현행 빈집등 실태조사 추진 시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추가하여 반영할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미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함
 -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빈집 종합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수립 주기,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참고하여 국가 차원의 빈집 종합시책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함
 - 현행법¹⁾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이미 5년 주기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1)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을 참고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 대상은 국가가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를 바탕으로 추산함
 - 국토교통부 내 관련 유사사례의 평균사업비는 9,8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이를 준용하며 시책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공고기관	사업비
2026년	빈 건축물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국토교통부	75
2025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부동산원	100
2023년	제2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140
2022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77
평균			98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빈집의 정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등의 책무)	98	-	-	-	-	98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